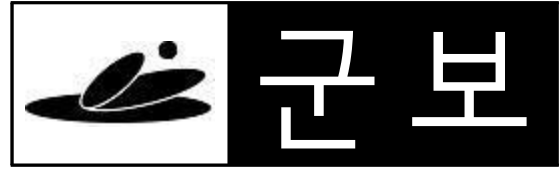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669호 2022. 8. 1.(월)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22-122호 : 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 예산군 고시 제2022-123호 : 군계획시설(응봉면 소로 2-6호)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3
- 예산군 고시 제2022-124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5차변경승인 고시(내포신도시 RH-3BL공동주택 신축공사) 7
- 예산군 고시 제2022-125호 : 오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9
- 예산군 고시 제2022-126호 : 신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10
- 예산군 고시 제2022-129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1차변경승인 고시(내포신도시 RH-4-2BL공동주택 신축공사) 11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22-1376호 : 소나무류 반출금지 공고 14
- 예산군 공고 제2022-1386호 : 행정처분(직권취소(폐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6
- 예산군 공고 제2022-1417호 : 주교리 농공단지 도시계획도로(소3-161호)개설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18
- 예산군 예산읍 공고 제2022-32호 : 도로점용(굴착)허가(제2022-32호) 24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2-1438호 :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5

회 람									
--------	--	--	--	--	--	--	--	--	--

예산군 고시 제2022-122호**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예산군수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나. 사업개요

도시명	사업명	위치	사업의종류	면적	사업량	비고
덕산면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덕산면 신평리 121-1 번지	군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 시설)사업	31,645㎡	차라용량5000m³/일(증설) (기존시설용량:7000m³/일)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성명 : 예산군수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2020. 3. 6. ~ 2021. 12. 31.
(변경) 2020. 3. 6. ~ 2022. 12. 31.

마. 변경사유 :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한 공사 착공 지연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33,753	31,645					
1	덕산면 신평리	488-28	잡	6,570	5,070	예산군				
2	덕산면 신평리	122-4	잡	5,511	5,003	예산군				
3	덕산면 신평리	122-7	잡	774	774	예산군				
4	덕산면 신평리	121-8	잡	2,867	2,867	예산군				
5	덕산면 신평리	113-5	잡	778	778	예산군				
6	덕산면 신평리	113-10	잡	152	152	예산군				
7	덕산면 신평리	113-11	잡	65	65	예산군				
8	덕산면 신평리	117-2	잡	385	385	예산군				
9	덕산면 신평리	118-8	잡	982	982	예산군				
10	덕산면 신평리	118-2	잡	248	248	예산군				
11	덕산면 신평리	495-1	잡	431	431	예산군				
12	덕산면 신평리	118-1	잡	268	268	예산군				
13	덕산면 신평리	118-7	잡	622	622	예산군				
14	덕산면 신평리	118-9	잡	610	610	예산군				
15	덕산면 신평리	118-11	잡	265	265	예산군				
16	덕산면 신평리	119-5	잡	1,181	1,181	예산군				
17	덕산면 신평리	119-3	잡	537	537	예산군				
18	덕산면 신평리	119-4	잡	30	30	예산군				
19	덕산면 신평리	119-6	잡	2,086	2,086	예산군				
20	덕산면 신평리	120-1	잡	6,867	6,867	예산군				
21	덕산면 신평리	495	구	640	540	농림축산 식품부				
22	덕산면 신평리	121-12	잡	145	145	예산군				
23	덕산면 신평리	121-11	잡	1,333	1,333	예산군				
24	덕산면 신평리	121-4	잡	155	155	예산군				
25	덕산면 신평리	121-1	잡	244	244	예산군				
26	덕산면 신평리	121-9	잡	7	7	예산군				

예산군 고시 제2022-123호**군계획시설(응봉면 소로 2-6호)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사무 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2022년 07월20일
예산군수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

도시명	사업명	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량	비고
응봉면	예산 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증곡리일원	군계획시설 (도로)	도로확포장 9,193m ²	

다. 시행자지정 사항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성명 : 예산군

라. 사업기간 : 2022. 7. 20. ~ 2024.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40,092	9,193					
1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68-2	도	188	150	임석규	경성부 락원정 84			
2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8-7	도	631	386	공	충청남도			
3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9-2	도	132	132	임용규외1인	삼교읍 두리 605			
4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99-14	구	76	76	국	농수산부			
5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8-4	도	375	238	공	충청남도			
6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8-3	도	18	1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8-2	도	19	19	이기옥	평촌리 42			
8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63-2	답	1,285	27	박시연외7인	성북구 길음동 1280 길음뉴타운 209-803			
9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8-11	도	323	323	이기옥	평촌리 42			
10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66-2	답	1,244	154	심귀섭외3인	대전 서구 갈마동 1418 큰마을아파트 108-206			
11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8-13	도	75	7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2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66-3	답	2,560	331	조한욱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186			
13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6-1	도	227	227	공	충청남도			
14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7-9	도	36	36	공	충청남도			
15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99-6	구	411	220	국	농수산부			
16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7-2	도	179	179	이기동	331			
17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352-4	천	62	62	국	건설부			
18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3-8	도	11	11	공	충청남도			
19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4-2	도	36	36	박상목	삼교읍 상성리 161			
20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4-1	도	268	268	박상목	상성리 161			
21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3-4	도	246	237	공	예산군			
22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3-6	대	342	207	김장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35번길 60, 102동 1102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23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0	잡	780	6	김장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35번길 60, 102동 1102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24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3-1	도	195	195	공	예산군			
25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3-3	도	175	175	공	충청남도			
26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11	대	2,406	228	주식회사 팍스코	성남시 증원구 하대원동 236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7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3-7	대	232	232	주식회사 팍스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36			
28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10-8	대	120	5	주식회사 팍스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36			
29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10-7	대	97	17	공	예산군			
30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10-2	대	172	66	태병만외1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713 에텐아파트 101-506			
31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10-5	도	139	139	공	충청남도			
32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10-3	종	1,057	231	재단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 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4-8			
33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10-1	도	311	311	전원중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 222			
34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산25-6	임	3,434	187	최영순	천안시 봉명도 60-59	농업협동 조합중앙 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봉명지점)	
35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10-4	도	33	33	전원중	운곡리 222			
36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9	대	162	115	안동권씨운곡만 경파직손종회	운곡리 110			
37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5-3	도	1,369	241	공	충청남도			
38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8-1	대	127	75	권오숙외2인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97-8			
39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8-7	대	204	12	최영순	천안시 봉명동 60-59	농업협동 조합중앙 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봉명지점)	
40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68-12	천	79	2	최태석	응봉면 노화리 45			
41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373-20	구	99	7	국	농수산부			
42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263-6	답	562	14	김정식	노화리 336			
43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373-6	구	1,286	481	국	농수산부			
44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374-5	도	462	38	국	농수산부			
45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419-19	도	13	1	공	예산군			
46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419-9	대	182	105	장태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41, 201호(안양동)	예산신우 신용협동 조합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70	
47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419-18	대	260	129	장태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41, 201호(안양동)	예산신우 신용협동 조합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70	
48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419-4	도	393	393	강이영				
49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419-3	대	291	147	박창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34, 402동 902호 (도농동, 부영그린타운)			
50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419-2	도	177	177	공	충청남도			
51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476-2	도	1,930	700	국	건설교통부			
52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419-13	대	970	153	박창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34, 402동 902호 (도농동, 부영그린타운)			
53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419-1	대	1,088	292	이빈주	419-1			
54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419-5	도	3	3	강이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5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434	답	8,995	150	이빈주	419-1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56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423-2	도	132	132	신평여	노화리			
57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423-7	도	712	291	공	충청남도			
58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423-6	답	2,192	115	박준형외2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66-6 영남아파트 504-1004			
59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439-2	도	357	123	박복래	계정리 183			
60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439-1	대	152	60	공	충청남도(교육감)			

예산군 고시 제 2022-12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5차 변경승인 고시

엘리움주식회사 대표 노승호 외 2인이 시행하는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M9블록 (삽교읍 목리 1275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예 산 군 수

1. 사업명 : 내포신도시 RM-9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 엘리움주식회사 대표 노승호 외 2
(엘리움개발주식회사 대표 이현석, 엘리움주택주식회사 대표 이종열)
 -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204호(아이비프라자)
3. 사업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M-9블록 (목리 1275번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계획4차변경승인	사업계획5차변경승인
주택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50,490.7000㎡ ○ 연 면 적 : 131,423.9936㎡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방법 : 분양 ○ 사업규모 : 주15동(지하1층,15~20층)/868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A형 (전용 59.9710㎡) : 17세대 - 59B형 (전용 59.9138㎡) : 34세대 - 75A형 (전용 75.9392㎡) : 106세대 - 75B형 (전용 75.7975㎡) : 374세대 - 76 형 (전용 76.9852㎡) : 96세대 - 84A형 (전용 84.9726㎡) : 184세대 - 84B형 (전용 84.9594㎡) : 19세대 - 84C형 (전용 84.9144㎡) : 38세대 ○ 사 업 비 : 252,810,340천원 ○ 사업기간 : 2020.08.03.~2022.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50,490.7000㎡ ○ 연 면 적 : 131,423.9936㎡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방법 : 분양 ○ 사업규모 : 주15동(지하1층,15~20층)/868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A형 (전용 59.9710㎡) : 17세대 - 59B형 (전용 59.9138㎡) : 34세대 - 75A형 (전용 75.9392㎡) : 106세대 - 75B형 (전용 75.7975㎡) : 374세대 - 76 형 (전용 76.9852㎡) : 96세대 - 84A형 (전용 84.9726㎡) : 184세대 - 84B형 (전용 84.9594㎡) : 19세대 - 84C형 (전용 84.9144㎡) : 38세대 ○ 사 업 비 : 252,810,340천원 ○ 사업기간 : 2020.08.03.~2022.12.17. <p style="text-align: center;">[첨부] 변경세부사항</p>

5. 사업승인일 : 2020.05.07. (2020-도시재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6. 변경승인일 : 1차-2020.07.06., 2차-2020.07.31., 3차-2021.04.26., 4차-2022.04.05., 5차-2022.07.20.
7.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의한 의제

■ 변경 세부 사항

□ 설계변경 세부항목(건축)

구 분	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1	A1-045 부대시설 면적산출근거표	-	- 경비실#1 면적선형 변경(면적변경 없음)	교통심의 조치계획 내용 반영
2	A1-012~020 배치도 및 시설물 관련 도면	-	- 단지 주출입구 도로선형 변경	교통심의 조치계획 내용 반영
		-	- 문주 및 경비실 위치이동	교통심의 조치계획 내용 반영
		-	- 쓰레기 분리수거장 위치 이동 및 개소 변경	충남개발공사 협의에 따른 변경
		- 쓰레기 분리수거장 H=900mm	- 쓰레기 분리수거장 H=1,200mm - 높이 변경에 따른 경사로, 계단 변경	충남개발공사 협의에 따른 변경
3	A5-401~407 경비실	- 경비실#1 계획	- 경비실#1 평면계획 변경	교통심의 조치계획 내용 반영
		- 경비실 창호 계획	- 경비실 창호 AW1 변경 SSD1, AW2, AW3, AW4 삭제	

예산군 고시 제2022-125호

오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 정비법 제59조에 의거 『오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승인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예 산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오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거점지·배후마을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등 공간확보 및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 교류기회 확대로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주요사업내용
 - 가. 위 치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일원
 - 나. 면 적 : 3,230ha(거점지 570ha, 배후마을 2,660ha)
 - 다. 사업내용 : 복지회관 리모델링, 주민어울림관 리모델링 및 신축, 마을안길 정비, 중심가로 환경정비, 수변쉼터 조성, 보행육교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
4.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2,800, 지방비 1,200)
5.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19년~2023년(5개년)
7. 기타 관계서류 및 편입토지 등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농정유통과 농촌활력팀 (☎ 041-339-7567) 및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041-330-3581)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 가능

예산군 고시 제2022-126호

신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의거 『신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1일

예 산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신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거점지·배후마을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등 공간확보 및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 교류기회 확대로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주요사업내용
 - 가. 위 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일원
 - 나. 면 적 : 3,561ha(거점지 823.9ha, 배후마을 2,737.1ha)
 - 다. 사업내용 : 열린교감센터 1관(복지회관 리모델링), 열린교감센터 2관 신축, 열린교감쉼터 조성, 열린야외공방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
4.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2,800, 지방비 1,200)
5.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19년~2023년(5개년)
7. 기타 관계서류 및 편입토지 등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농정유통과 농촌활력팀 (☎ 041-339-7567) 및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041-330-3517)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 가능

예산군 고시 제 2022-12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1차 변경 승인 고시

주식회사 충남내포1피에프브이 대표 정대준 외 1인이 시행하는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4-2BL(삽교읍 목리 82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6일

예 산 군 수

1. 사업명 : 포신도시 RH4-2BL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 주식회사 충남내포1피에프브이 대표 박재근 외 1
(주식회사 디케이랜드 대표 정태원)
 -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55, 701호(백현동, 로제비앙스퀘어)
3. 사업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H4-2BL (목리 826번지)
4. 사업개요

사업 종류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1차변경승인
주택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40,154.00㎡ ○ 연 면 적 : 135,883.7366㎡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방법 : 민간분양 ○ 사업규모 : 주9동자하2층19~23층/ 601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A형 (전용 120.9833㎡) : 119세대 - 120B형 (전용 120.5450㎡) : 244세대 - 120C형 (전용 120.9585㎡) : 238세대 ○ 사 업 비 : 282,424,000천원 ○ 사업기간 : 2022.08.01.~2025.0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40,154.00㎡ ○ 연 면 적 : 135,844.1652㎡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방법 : 민간분양 ○ 사업규모 : 주9동자하2층19~23층/ 601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A형 (전용 120.9833㎡) : 119세대 - 120B형 (전용 120.5450㎡) : 244세대 - 120C형 (전용 120.9585㎡) : 238세대 ○ 사 업 비 : 282,424,000천원 ○ 사업기간 : 2022.09.01.~2025.03.31. <p style="text-align: center;">[첨부] 변경세부사항</p>

5. 사업승인일 : 2022.05.13. (2022-도시재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6. 변경승인일 : 1차-2022.07.25.
7.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의한 의제

▣ 변경 세부 사항

■ 변경 세부사항

[서 류]

NO	변경목록	세부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1	-	-	전기통신 관계자 변경 →지케이	전기통신 관계자 변경 →신한티이씨	-

[건 측]

NO	변경목록	세부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1	설계개요	건축면적	6,776.2870m ²	6,776.2870m ²	구조심의 반영으로 인한 면적 변경	
		연면적	총 연면적	135,883.7366m ²		135,844.1652m ²
			지상 연면적	90,296.9362m ²		90,296.9362m ²
			지하 연면적	45,586.8004m ²		45,547.2290m ²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90,296.9362m ²	90,296.9362m ²		
		건폐율	16.88%	16.88%		
		용적률	224.88%	224.88%		
2	면적산출근거	지하주차장 면적	41,346.8461m ²	41,310.5334m ²		
		기계/전기실 면적	754.9933m ²	752.9485m ²		
3	근린생활시설 면적산출근거표	전용면적	260.1581m ²	258.2346m ²		
		공용면적	50.2870m ²	50.6231m ²		
		근생 주차장 면적	264.0150m ²	264.3885m ²		
4	형별성능내역	형별성능내역(주거)	외측:THK22로이복층 유리(1면) 내측:THK22로이복층 유리(1면)	외측:THK22복층유리 내측:THK22복층유리		
5	단위세대 평면도	120m ² A 단위세대 평면도 (기본형)	-	벽체보강	벽체 보강으로 인한 단위세대 변경	
		120m ² A 단위세대 평면도 (확장형)				
		120m ² B 단위세대 평면도 (기본형)				
		120m ² B 단위세대 평면도 (확장형)				
		120m ² C 단위세대 평면도 (기본형)				
		120m ² C 단위세대 평면도 (확장형)				

NO	변경목록	세부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6	동평면도, 코어 평단면도, 아파트 공용 창호일람표	동평면도, 코어평면도, 아파트 공용 창호일람표	계단실 문크기 1100	계단실 문크기 1200	사용자 편의를 위한 문크기 조정 (1100 → 1200)
7	입면도	저층부 석재마감	3개층 저층부 석재마감	3-5개층 저층부 석재마감	건축심의 반영으로 인한 변경
8	단위세대 창호일람표	단위세대 창호일람표	외측:THK22로이복층 유리(1면)/ 내측:THK22로이복층 유리(1면)	외측:THK22복층유리 내측:THK22복층유리 터닝도어 유리사양 추가	성적서 기준에 맞게 오기 정정
9	지하주차장, 전기실,발전기실,펌 프실,저수조	지하주차장 평면도, 전기실,발전기실,펌프실, 저수조	-	벽체두께변경	구조심의 반영으로 인한 면적 변경
10	단위세대 단열,방수,결로방지 설치 상세도	단위세대 평면도	-	결로방지 단열 추가	결로방지 단열 추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예산군 공고 제 2022 - 1376 호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수 (본)		
합계 (1개면, 6개리)	858		0.1	1		
덕산면 사천리	357	-	-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덕산면 대동리	82	-	0.1	1		
덕산면 외라리	70	-	-	-		
덕산면 내라리	54	-	-	-		
덕산면 복당리	57	-	-	-		
덕산면 낙상리	238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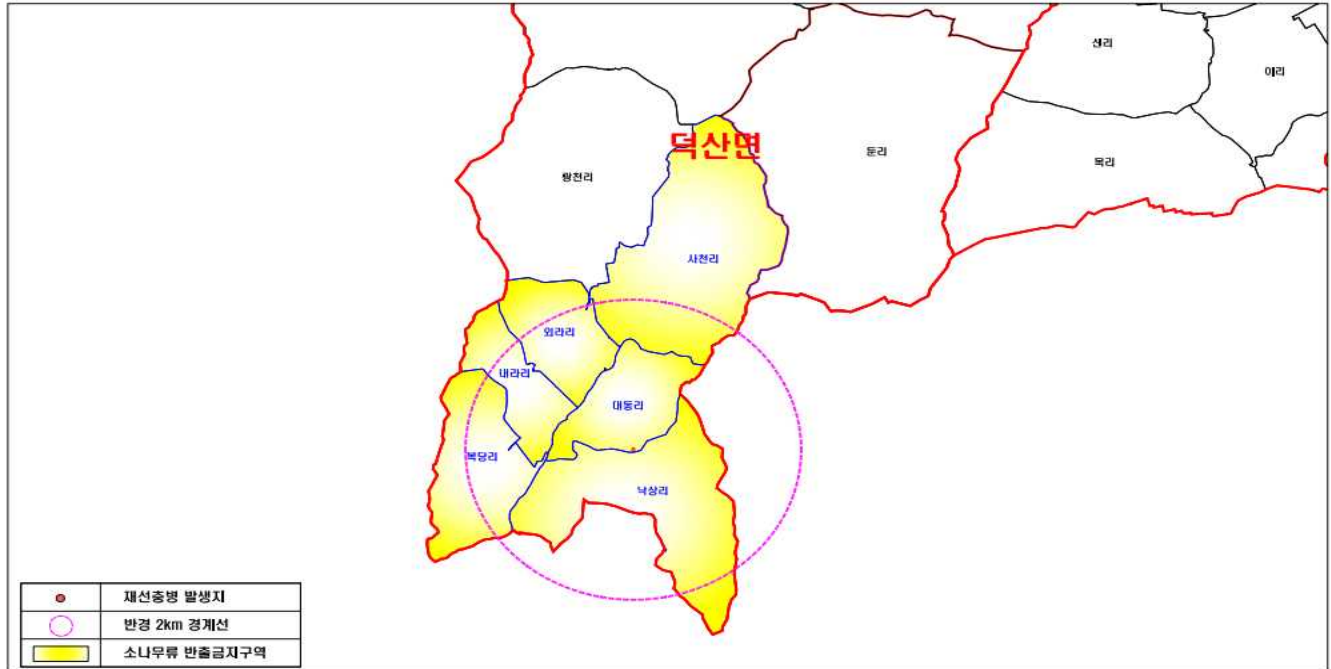
2022년 7월 15일

예 산 군 수 (인)

예산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현황

위 치 :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일원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류 취급(이동)시 유의사항

구 분	반출금지구역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일반지역)
대상수종	소나무, 잣나무, 해송	소나무, 잣나무, 해송
소나무류 이동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나무류를 사업장 외로 이동 금지 다만, 조경수 및 분재는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 가능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사업장내에서 소각 또는 파쇄하여야 함(이동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나무류 이동가능 단, 예산군 산림녹지과에서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후 이동 하여야함 ○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소유자가 감염 검사 받은 후 이동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여부 검사 후 이동하여 소각, 파쇄 또는 지역주민연료 지원 가능 ※ 감염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 및 팔감지원 등은 위법
방제처리 계획서	○공사 착수시 소나무류처리계획서(소각, 파쇄 등)를 예산군청 산림녹지과로 제출 ⇒ 처리완료 후 결과 제출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음 다만, 소나무류 이동시 생산확인신청서 제출 ⇒ 감염여부 확인 후 이동가능

※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산군 공고 제2022 - 1386호

행정처분(직권취소(폐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20호,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5호,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 폐쇄가 확인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물환경보전법」 제71조, 제7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 제51조에 따라 행정처분(직권취소(폐쇄)) 하고자 등기우편 통지한 바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고자합니다.

1. 공고내역 : 행정처분(직권취소(폐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사업장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공시송달사유
1	대도산업(주)	대표	신암면 신종두곡길 11	반송(수취인불명)
2	(주)구웅산업	대표	대술면 대술로 583-28	반송(이시김)
3	(주)대안테크	대표	대술면 대술로 699-1	반송(이사감)
4	그린세프	대표	대술면 시루미길 29-5	반송(이사감)
5	1급동일자동차공업사	대표	광시면 예당로 191	반송(이사감)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대기, 폐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철거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대기, 폐수, 소음진동배출시설 직권취소(폐쇄)
5.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85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71조, 제7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 제49조, 제5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6. 공고기간 : 2022. 7. 20. ~ 2022. 8. 4. (15일간)
7. 청문일시 및 장소
 - 가. 청문일시 : 2022. 8. 5.(금) 10:00

나. 청문장소 : 예산군청 6층 환경과 사무실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지참서류 : 신분증, 도장, 입증자료,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

8. 지정된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직권취소(폐쇄))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기, 폐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취소됩니다.
9.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http://simpan.go.kr>) 청구 또는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 환경과(041-339-7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2022년 7월 19일

예 산 군 수

예산군 공고 제2022 - 1417호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주교리 농공단지 도시계획도로(소3-161호)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예 산 군 수

1. 사업명 : 주교리 농공단지 도시계획도로(소3-161호)개설공사
2. 사업구간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513-1번지 외 27필지
3. 토지 및 지장물조서 열람장소: 예산군청 도시재생과(041-339-7713)
4. 열람기간 : 2022. 7. 29. ~ 2022. 8. 12.
5. 보상시기 : 감정 평가 후 별도 통지
6. 토지조서 : 붙임 목록과 같음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는 개별통지

7.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라 3인(2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협의함
- 나.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m ²)	소유자		날인	전화번호	감정평가업자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1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토지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동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토지 현황

※ 측량 결과에 따라 편입면적은 용지조서의 편입면적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비고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주교리	505-14	505-22	대	117	4	한*량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	
2	주교리	506-2	506-8	전	295	112	안*숙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	
3	주교리	505-3	505-19	대	339	7	한*량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	
4	주교리	505-4	505-20	대	218	5	정*천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	
5	주교리	505-4	505-23	대	218	1	정*천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	
6	주교리	506-3	506-7	전	330	7	김*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45-5 삼산타운 ***-***	
7	주교리	506-3	506-14	전	330	121	김*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45-5 삼산타운 ***-***	
8	주교리	506-3	506-9	전	330	2	김*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45-5 삼산타운 ***-***	
9	주교리	505-5	505-24	대	793	66	이*호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	
10	주교리	506-5	506-12	전	331	108	박*결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	
11	주교리	506-5	506-13	전	331	4	박*결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	
12	주교리	506-4	506-10	전	514	177	안*숙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	
13	주교리	506-4	506-11	전	514	72	안*숙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	
14	주교리	505-8	505-25	전	494	65	박*백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	
15	주교리	505-8	505-26	전	494	1	박*백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	
16	주교리	512-10	512-39	하천	651	23	임*영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임북로 50, ***동 ***호	
17	주교리	512-10	512-39	하천	651	23	김*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임북로 50, ***동 ***호	
18	주교리	512-10	512-39	하천	651	23	김*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임북로 50, ***동 ***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비고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9	주교리	512-19	512-41	전	523	23	이*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 **	
20	주교리	512-18	512-40	대	504	71	박*섬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	
21	주교리	512-6	512-35	전	628	18	김*길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길 ***	
22	주교리	512-6	512-34	전	628	1	김*길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길 ***	
23	주교리	512-22	512-38	전	641	117	김*길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길 ***	
24	주교리	513-1	513-25	전	2,464	113	김*린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 **-**	
25	주교리	505-10	505-21	대	393	1	김*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	
26	주교리	512-9	512-36	전	766	88	이*돈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155번길 50, 109동 702호 (예산발연계룡리슈빌아파트)	
27	주교리	512-9	512-9	전	766	40	이*돈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번길 **, ***동 ***호	
28	주교리	512-9	512-42	전	766	1	이*돈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번길 **, ***동 ***호	

[붙임] 편입지장물 현황

※ 측량 결과에 따라 편입면적은 지장물조서의 편입면적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비고
							성명	주소	
1	주교리	506-2	울타리	철제	6	M	안*숙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2	주교리	506-2	울타리	철제	11	M	안*숙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3	주교리	506-2	블록	생태축조	30	M	안*숙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4	주교리	506-2	애사과		1	주	안*숙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5	주교리	506-2	옹벽	시멘트	1	식	안*숙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6	주교리	506-2	수목1		1	주	안*숙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7	주교리	506-2	창고	철제	68	m ²	안*숙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8	주교리	506-2	동산 이전비		1	식	강*구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 ****	
9	주교리	506-3	울타리	철제	10	M	김*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45-5 삼산타운 212-301	
10	주교리	506-3	주택		65	m ²	김*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45-5 삼산타운 212-301	
11	주교리	506-5	창고	철제	24	m ²	안*숙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12	주교리	506-5	소나무		2	주	안*숙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13	주교리	506-5	수목		6	주	안*숙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14	주교리	506-5	차고지	철제	44	식	안*숙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15	주교리	506-5	울타리	철망	11	M	안*숙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16	주교리	505-8	울타리	철근 철망	8	M	박*백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17	주교리	505-8	수목		1	주	박*백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18	주교리	504-5	복숭아		1	주	전*예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
19	주교리	504-5	수목		2	주	전*예	예산군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
20	주교리	512-18	수목		2	주	박*섬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
21	주교리	512-18	화단	2*3	6	m ²	박*섬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
22	주교리	512-18	감나무		1	주	박*섬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
23	주교리	512-18	수목		3	주	박*섬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
24	주교리	513-25	비닐 하우스		55	m ²	장*아	

※ 보상대상 세부내역목록 및 용지도는 예산군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041-339-7713)에 비치하며, 공고 기간 중 세부목록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위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이의신청서 양식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2. .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예 산 군 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예산읍장 (인)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중로 1-18호
점용의 목적	통신관로 매설	점용기간	2022. 07. 22. ~ 2031. 12. 31.
점용의 장소	예산읍 예산리 808	점용면적	점용면적 : 2.0㎡ 일시점용 : 25.0㎡
점용물의 종류	통신관로	공사기간	2022.07. . ~ 2022.8. .
공사 방법	노면 굴착 시공	굴착 시 교통대책	교통제시설물 설치 및 교통신호수 배치
도로의 복구방법	신청인 원상복구	도로굴착	기계 시공
점용자의 주소·성명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	그 밖의 사항	

예산군 공고 제2022-1438호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다. 예산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 라. 예산군 인구늘리기 추진단의 구성,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 마. 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바.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인구증가시책추진 위원회 관련 조 삭제(「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제8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2. 7. 29. ~ 8. 12.(15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참조 : 인구청년정책팀 ☎ 041-339-7237, FAX : 041-339-72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편발송 : (우편번호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총무과 인구청년정책팀
- 전자메일 : horangi1120@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7237, fax : (041)339-720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변경
2.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위기 대응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
4.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군 인구늘리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장,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 부서의 장 등 담당공무원

2. 교육, 농산업, 보건복지,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청년, 다문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로컬푸드 등과 관련된 사회단체, 기업체, 협의체 등의 임직원 및 회원

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역활동가,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 현안에 밝고 추진단 활동에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군민

제9조(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은 군민 의견 수렴 및 추진단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사업별, 읍·면별 분과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별 분과장은 과

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단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구감소대응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발굴
2. 민관 협업체계 구축, 활동 조직의 발굴 및 지원
3.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실행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대응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비의 지원 등) 위원회 및 추진단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붙임 1】 관계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6조의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등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자율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 마을·공동체 전문가 양성 등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행정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2021. 10. 19. 제정】**

인구감소지역지정 : 예산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군·구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증가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교육체육과장, 경제과장, 도시재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관내 대학 교수 또는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관내 지역사회 관련 단체 또는 인구증가 시책관련 기관 대표, 관계 전문가
4. 그 밖에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증가시책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간 소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총무과장